

녹 의: 제15 - 136호

2015년 07월 15일

수 신: 병(의)원장

참 조: 진단검사의학과장, 핵의학과장, 보험심사과장, 검사실장, 외주수탁 담당

제 목: 수탁중지 안내

1.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본 MERS-CoV 유전자 검사는 질병관리본부와의 용역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3. 귀원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.

- 아 래 -

**1. 수탁중지**

검사명	중지 사유	적용일
MERS-CoV 유전자검사 (메르스) (GC Labs 코드: L243)	질병관리본부 용역계약 만료	07월 16일 접수분

- \* 별첨: 질병관리본부 수신 공문  
 메르스(MERS) 검체 정보서  
 메르스 유전자검사 대상



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





# 질병관리본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메르스 유전자검사 관련 안내사항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: 총무과-6195(2015.07.02)호

3. 위 호와 관련하여, 임상검사센터의 메르스 유전자검사 계약기간이 7월 15일로 만료됨에 따라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그동안 귀 기관에 의뢰하던 의료기관에 안내해 주시어 검사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

가. 메르스 유전자 검사 수행기관: 해당 시·도 보건환경연구원

나. 메르스 유전자 검사 대상: 유전자 검사대상 1-4번(붙임 참고)

다. 검사 대상 발생시: 관할 보건소에 신고 및 검사 의뢰(검체정보서 작성)

라. 검사결과 환류: 해당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 결과 회신

마. 적용일시: 2015.07.16~ 메르스 위기 종료

※ 메르스 위기 종료 후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지침에 따름

붙임 검체정보서(유전자 검사대상 포함) 1부. 끝.

## 질병관리본부장

수신자 녹십자의료재단, 씨젠의료재단, 삼광의료재단, 서울의과학연구소, 이원의료재단, 랩지노믹스검사센터, 선합의원(SQ Lab)

보건연구사	<b>정향민</b>	보건연구관	<b>남정구</b>	호흡기바이러스과장	<b>김성순</b>	감염병센터 센터장	<b>성원근</b>
국립보건연구	전결 2015. 7. 15.						
원장	<b>이주실</b>						

협조자

시행 호흡기바이러스과-1674 접수

우 361-95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호흡기바이러스과 / http://

전화번호 043-719-8221 팩스번호 043-719-8239 / hmcheong@nih.go.kr / 비공개(5)



## [메르스 유전자검사 대상]

① 원인불명 폐렴으로 전문의, 병원장 및 보건소장의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

②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지침(제3-3판)에 따른 “의심 환자”

- ①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증후군(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)이 있으면서
  -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\*을 방문한 자 또는
  - 중동지역\*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급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\*\*
- ② 발열과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있으면서,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\* 의료기관에 직원, 환자, 방문자로 있었던 자
- ③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있고,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\*\*
- ④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 14일 이내에 중동호흡기증후군이 유행한\* 의료기관에 직원, 환자, 방문자로 있었던 자

(\*유행 : 한 의료기관에 2인 이상 발생)

\* 중동지역은 아라비아반도 및 그 인근 국가를 말함

(바레인, 이라크, 이란, 이스라엘의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, 요르단, 쿠웨이트, 레바논, 오만, 카타르, 사우디아라비아, 시리아, 아랍 에미레이트, 예멘)

\*\* 밀접접촉자

- 적절한 개인보호장비(가운, 장갑, N95 마스크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)를 착용하지 않고
-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
- 같은 방 또는 진료/치료/병실에 머문 경우(가족, 보건의료인 등)
-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

③ 메르스 대응 병원기반 중증폐렴 감시체계의 대상으로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메르스가 의심되는 경우

- ① 원인불명 폐렴
- ②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폐렴
- ③ 고위험군 폐렴(만성 폐질환, 당뇨, 만성 심부전, 만성 신부전, 면역 저하자)

④ 확진자 병원의 접촉자 중 발열, 호흡기 증상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